

2025년도 상반기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 공고

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2025년도 상반기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(승용차, 화물차, 승합차) 민간 보급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5. 1. 24.

서울특별시장

1. 사업 개요

○ 상반기 보급대수 : 4,513대(승용차 4,000대, 화물차 500대, 승합 13대)

① 전기승용차 : 일반 3,400대, 우선순위 600대

② 전기화물차 : 일반 250대, 택배 150대, 중소기업 생산 50대, 우선순위 50대

③ 전기승합차 : 어린이통학버스 10대, 순환·통근버스 3대

※ 보급대수는 보급여건 및 예산범위 내에서 변동될 수 있으며 전기택시·전기이륜은 별도 공고

※ 연간 총 5,713대(승용차 5,000대, 화물차 700대, 승합 13대)

(우선순위) 취약계층(장애인, 차상위 이하 계층), 상이·독립 유공자, 소상공인, 다자녀 가구,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, 기존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전기차로 대체하려는 자 등

○ 보급기간: '25. 2. 3.(월) 10:00 ~ ※ 예산소진시 조기 마감

○ 신청방법 : 환경부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(www.ev.or.kr)에서 신청

주의 1. 지원신청서 접수 순서와 관계없이 출고·등록순 보조금 지급

주의 2. 공고문 및 신청서식 등에 예시되지 않은 사례에 대한 해석 및 결정은 서울특별시 의견을 따름

○ 보조금 지원대상 차량 :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전기자동차

- ①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대상 자동차를 신규구매하여 국내에 신규등록하는 경우
 - ※ 자동차 등록말소 이력이 있는 차량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.
 - ※ 단, 공항·항만의 시설 내부 운행(도로외지역)을 목적으로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대상 자동차를 신규로 구매하여 자체적으로 등록할 경우 증빙서류 제출하여 지원 가능.
- ② 「자동차관리법」, 「대기환경보전법」, 「소음·진동관리법」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완료하여 판매·운행이 가능한 차량
- ③ 「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」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평가기준을 충족하는 차량
- ④ 전기자동차 주요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차량에 탑재된 배터리 처리현황 등 필수정보를 제공한 제조사가 생산한 차량

○ 보조금 지원대상 차량 및 지원금액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(www.ev.or.kr)에서 열람 가능

- ※ 공고일 이후 환경부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차량은 추가공고 없이 서울특별시 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됨
- ※ 승용차 보조금의 경우 BMS 이상장후 알림 추가보조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기재하였으며, 기능 이용에 미동의시 추가보조금 제외

2. 지원자격 및 대상

○ 공통자격

- (공통자격)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연속하여 서울특별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서울특별시에 30일 이상 사무소를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자
 - ※ 다만, 군인 등 특수한 경우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(재직증명서, 주민등록초본 등) 예외 적용

<보조금 미지원 대상>

- ① 전기자동차 제작·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
- ② 개인이 '재지원제한기간'* 내 2대 이상의 동일 차종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**(재지원 제한기간 내 최초구매 차량 1대 外)에 대해서는 보조금 미지원

* (승용·승합·화물) 2년

** (예시1) 전기승용 1대 구매 후 1년 뒤 전기승용을 또 구매 시 최초차량에만 보조금 지원 가능

(예시2) 전기승용을 동시에 3대 구매하려는 경우 이 중 1대에 대해서만 보조금 지원 가능

※ 초소형 승용, 초소형 화물, 법인 승합 구매 시 재지원제한기간 제한없음

(단, 승합은 구매자와 제조수입사 간의 특수관계인일 경우 재지원제한기간 2년 적용)

※ 단,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조금(지자체 보조) 지원받아 구매한 전기차를 폐차한 경우는 재지원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보조금 지원 가능

○ 지원대상별 기준

< 승용, 화물 >

- (개인) 서울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(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)이상
- (개인사업자) -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가 서울특별시인 경우
 - ※ 개인택시 등 개인영업용 차량의 경우 사용본거지를 기준으로 하며, 법인이 아닌 비영리민간단체, 사단·재단 등의 경우에 대표자 주소지와 관계없이 사업장 주소지가 서울일 경우 구매 가능
- (법인)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둔 사업자(본사, 지사, 공장, 자동차 대여사업소 등)
 - ※ 렌탈·리스 용도로 차량 구매, 등록 시
 - (1년 이상 장기렌탈·리스) 렌탈·리스 사업장 소재지와는 상관없이 실사용자가 신청일 기준 최소 30일 이전부터 연속하여 서울특별시에 거주한 경우 신청 가능
 - (단기렌탈·리스) 사업장 소재지가 30일 연속 서울특별시인 경우 신청 가능
 - (이용자명의 리스) 차량등록증 상 명의가 개인(구매자)인 경우 개인구매 기준 적용 (단, 계약서 등을 통해 회수의무 이행주체를 명확히 지정하고 증빙자료 제출하여야 함)
 - ※ 단기렌탈·리스로 신청 후 2년내 타 지자체 거주민에게 장기 렌탈할 경우 보조금 환수
- (외국인)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재외국민(F4비자), 국내영주권자(F5비자) 등 국내 체류기간이 2년 이상 남아있는 자로 만 18세 이상
- (공공기관) 서울특별시 소재 공공기관¹⁾ ※ 중앙행정기관은 제외

< 어린이통학 차량>

- (개인, 개인사업자, 법인) ※ 대표자 및 사업장 주소 모두 서울특별시인 경우 가능
 - 서울시에 등록된 어린이통학 차량으로 사용하기 위해 전기 승합차를 신차로 구입하는 어린이통학차량 소유자 (신고예정자 포함)
 - 「도로교통법」 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를 한 자(신고 예정자 포함)
 - 「도로교통법」 제52조에 따른 ‘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’상 주소지가 ‘서울’에 해당하여야 신청 가능

< 통근·순환 버스>

- (법인) : 복지, 의료시설 등의 순환버스, 통근버스 등
 - ※ K-EV100 참여와 상관없이 제작·수입사(판매사 포함)가 자사의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와 리스·렌트용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지원 불가

1) 공공기관은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 제1항에 의거하여 당해연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으로 함

○ 구매지원 신청시 필수요건

- ① 구매 지원신청서 제출 전, 전기자동차 제작·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
- ②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위탁·제공 동의
- ③ 보조금 지원취소 또는 환수사항, 보조금 지급신청 유의사항 등 확인 및 서명(구매지원 신청서)
- ④ 구매지원 자격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 출고·등록 가능한 차량에 한하여 신청

3. 보조금 지원기준 및 단가

○ 구매 보조금

(단위 : 만원/대)

| 구 분 | | 계 | 국비보조금 | 지방비보조금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|--------|--------|
| 전기승용 | 중·대형 | 최대 630 | 580 | 50 |
| | 소형 | 최대 575 | 530 | 45 |
| | 초소형 | 225 | 200 | 25 |
| 전기화물 | 소형 | 최대 1,350 | 1,050 | 300 |
| | 소형(특수) | 최대 1,990 | 1,550 | 440 |
| | 경형 | 최대 1,010 | 770 | 240 |
| | 초소형 | 530 | 380 | 150 |
| 전기승합 | 중형 | 최대 10,000 | 5,000 | 5,000 |
| | 대형 | 최대 14,000 | 7,000 | 7,000 |
| 전기승합 (어린이동학) | 중형 | 최대 13,000 | 10,000 | 3,000 |
| | 대형 | 최대 15,000 | 11,500 | 3,500 |

- ※ 승용차(중·대형, 소형), 화물차(소형, 경형), 승합(대형, 중형) : 지방비보조금은 국비보조금에 비례하여 차등 지급
- ※ 승용차는 차량가격에 따라 보조금 차등 지원(5.3천만원 미만 100%, 5.3천만원 이상 ~ 8.5천만원 미만 50%, 8.5천만원 이상 미지원), 시비는 국비에 비례하여 지원
- ※ 승합(대형) : 최소 자부담금 1억이상이며, 전체 보조금은 차량가격의 70%를 초과할 수 없음.
 - ▶ 순환버스용 이층·굴절버스의 서울시 보조금은 최대 한도내에서 지원
 - ▶ 구매자가 이자 지원, 충전기 설치 등 별도 지원을 받은 경우 해당 금액(또는 물품의 가액)만큼은 자부담금 산정시 제외
- ※ 차종별 보조금은 환경부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(www.ev.or.kr) 참조

○ 추가 보조금: 구매보조금과 별도로 구매자의 신청에 의거 추가지원

| 구 분 | | 추가지원 |
|---|--|--|
| 전기승용 | 공 통 | 청년 생애 최초 구매자인 경우에는 국비 지원액의 20% 추가 지원 ※ 청년은 청년기본법 제3조에 따라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 시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20% 추가 지원 |
| | 중·대형, 소형 | 다자녀가구인 개인 구매 시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 추가 지원 ※ 다자녀가구는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구로 18세 이하 자녀가 2명인 경우 국비 100만원, 3명인 경우 200만원, 4명 이상인 경우 300만원 추가 지원 ※ 부모 중 한 명이 보조금을 신청한 경우에만 추가보조금 지원(자녀는 불가) 기존 노후 전기차(BMS 안전기능* 업데이트가 불가능한 차량에 한 함)를 폐차하고 전기차를 재구매하는 경우 국비 20만원 추가 지원 ※ 배터리 이상을 주차 중에도 감지(상시 또는 간헐)하고 차주 및 제작사에 알리는 기능 제조수입사가 BMS 이상 상태 알림 기능을 4년 이상 무상제공하 고 사용자가 알림 기능 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시비 보조금의 20% 추가 지원(단, 주차상태에서 24시간 이상 배터리 이상을 감지 시) |
| | | 초 소 형 |
| | 전기화물 | 소 형, 경 형, 초 소 형 |
| 농업인*이 구매시 해당차량 국비 지원액의 10% 추가지원 * 「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」 제3조 및 「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」에 따른 농업인 확인서 또는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」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(또는 증명서) 제출 자 | | |
| 택배용 차량*으로 전기화물차 구매 시, 국비 지원액의 10% 추가 지원 ※ 기존 경유화물차를 폐차하고 전기화물차 출고일 기준 6개월간 택배업 허가를 유지한 경우 지급 ※ 신규 택배차량은 전기화물차 출고하고 6개월간 택배업 허가를 유지한 경우 지급 ※ 소상공인 30% 추가지원금과 중복 지원 가능 * 「화물자동차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운송사업 중 화물을 집화·분류·배송 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| | |
| 경유화물차를 보유한 전기화물차 구매자 중 폐차 미이행자는 성능보조금 50만원 차감, 이행자는 50만원 추가 지원 ※ 노후경유차 폐차로 조기폐차 지원금 수령시 20만원만 추가 지원 ※ '23년 전기차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시행 이후 폐차건부터 해당 ※ 경유화물차 미보유자는 상기 규정 해당없음(보조금 지급신청 전까지 명의변경, 수출말소시 미보유자로 인정) [예시] (구매차량 국비 보조금 ± 폐차이행 추가금) × 추가 보조요율 또는 (구매차량 국비 보조금 ± 폐차이행 추가금) + 추가 보조금 | | |
| 제조·수입사가 자사 차량가격 할인(50만원)하면 해당차량에 대해 시비 지원액의 50만원 추가 지원(택배차량은 50만원 추가 지원) | | |
| 초 소 형 | 도심내 영업용(배달·관광 등) 및 단거리 교통수단 등 지역거점사업 추진 목적으로 구매 시, 국비 50만원 추가 지원 | |

4. 구매 지원신청

- 신청일시 : '25. 02. 03.(월). 10:00 ~ ※ 예산소진시 조기 마감
- 재지원 제한기간 : 승용·승합·화물 2년
- 구매가능 대수

- ① 승용: 개인, 개인사업자, 법인: 1대(재지원 제한기간 2년으로 기한 내 추가 구매 시 미 지원)
※ 법인의 경우 초소형 승용 구매 시 재지원 제한기간 및 구매대수 제한 없음

☞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2년 이내 2대 이상의 전기승용차를 구매하려는 경우 국비만 지원하고 '재지원제한기간' 미적용

※ 1대는 서울시에 신청, 그 이후 신청 시 국비만 받고 한국환경공단에 신청 가능

- ② 화물: 개인, 개인사업자, 법인: 1대(재지원 제한기간 2년으로 기한 내 추가 구매 시 미 지원)
※ 기존 노후 경유(화물)차를 조기폐차한 경우 폐차 1건당 1회 재지원 제한기간 미적용 단, '23년 전기차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시행('23.2.13. 이후 폐차건부터 해당)
※ 법인의 경우 초소형 화물차 구매 시 재지원 제한기간 제한없으나 구매대수는 50대로 제한
※ 전기화물차(초소형) 5대 이상 구매시 사업계획서 제출 필수(별지 제4호서식)
단, K-EV100 참여업체 및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대상 기업은 사업계획서 제출 제외

☞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2년 이내 2대 이상의 전기화물차를 구매하려는 경우 국비만 지원하고 '재지원제한기간' 미적용

※ 1대는 서울시에 신청, 그 이후 신청 시 국비만 받고 한국환경공단에 신청 가능

③ 승합

- 어린이통학버스 : 개인·개인사업자·법인 1대
- 순환·통근버스 : 법인 1대(개인, 개인사업자는 미지원)

※ 법인은 '재지원 제한기간' 미적용

단, 구매자와 자동차 제작·수입사가 「상법」상 특수관계(상법 시행령 제34조제4항에 따른 특수관계인)에 해당하는 경우 '재지원제한기간(2년)' 적용

○ 신청방법

- 구매자가 제작·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, 자격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출고·등록이 가능할 경우 구매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
-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포함한 증빙자료는 자동차 제작·수입사가 대행
-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(ev.or.kr)내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 제출

○ 제출서류

- (공통)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(별지 제1호 서식), 전기자동차 구매계약서
※ 개인, 개인사업자, 법인 등의 증빙자료는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서류여야 함
- (개인)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(전입일 확인 가능한 서류)
- (개인사업자) 주민등록등본, 사업자등록증명원
※ 비영리단체, 사단·재단 등일 경우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제출
- (법인) 법인등기부등본
※ 장기 렌탈리스 렌탈리스 계약서 및 렌탈리스 실 사용자의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
- (외국인) 국내거소사실확인서 또는 외국인등록증 등(체류기간 2년 이상 확인 가능 서류)

< 추가 서류 >

- (장애인) 장애인등록증
- (기존 노후 전기차 폐차 후 재구매) 자동차등록말소 사항이 기재된 자동차등록원부(갑)
- (BMS 알림기능 탑재 추가보조금) 배터리관리시스템 알림 정보제공 동의서
- (차상위 이하 계층) 차상위 계층 증명서, 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
- (소상공인) 소상공인 증명서(중소벤처기업부 발급)
- (지역거점사업 참여 신청서) 별지 제3호 서식
- (상이·독립유공자) 국가유공자 등록증 또는 그 외 증빙 가능한 서류
- (다자녀) 가족관계증명서
- (경유화물차 대체 구매) 조기폐차 대상자 확인서 또는 말소 사실 증명서(폐차)
- (농업인)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(또는 증명서), 농업인 확인서
- (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) 만 19세~현재까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
- (전기화물차 다량구매자 사업계획서) 초소형 전기화물차 5대 이상 구매자(별지 제4호 서식)
- (택배화물차)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, 운송계약서 사본(계약기간 명시, 6개월후)
- (어린이통학 버스)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, 자부담 확인서(승합-대형), 하자보증보험증권
- (통근·순환 버스) 통근버스 사용 협약서, 자부담 확인서(승합-대형), 하자보증보험증권
- (시민 대상 제작수입사 차량 할인제 참여) 전기자동차 제조·수입사 할인 구매 확인서
* 차량 구매계약서에 할인금액이 명시되어야 함.

5.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: 차량출고·등록순(*승합: 접수순)

- 지원신청한 건 중에서 전기자동차 제작·수입사 본사에서 10일 이내에 차량출고 가능하다고 제출한 명단에 한하여 서울시에서 자격부여
 - ※ 각 본사에서 greencar@seoul.go.kr로 명단 제출한 건에 대하여 익일 자격부여 예정
 - ※ 자격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 출고해야 하며, 2개월내 미출고시 보조금 신청 취소
 - 전기자동차 제작·수입사는 자격부여를 받은 차량에 한하여 출고예정증명서 등의 자료를 첨부하여 구매보조금 지원 가능 여부를 서울시예 요청
 - 서울특별시에서는 제작·수입사의 출고(예정)일에 따라 예산범위내에서 보조금 지원 대상자 확정 통보
 - 대상자 확정 통보일로부터 전기자동차 제작·판매사는 10일 이내 차량 출고 및 등록, 20일 이내 보조금 지급신청
 - 구매보조금 지원대상자 확정 통보를 받지 않고 출고된 차량은 보조금 지급 불가
 - 최초 등록하는 사용본거지를 서울특별시로 한정(단, 1년 이상 장기 렌탈·리스업체 제외)
- ※ 차량출고 관련 문제는 차량 제작·수입사에 문의

6. 보조금 지급(모든 서류는 보조금 지급시스템에 제출)

- 지급신청: 차량 출고·등록 완료 후 자동차 제작·수입사에서 진행
 - 제출서류: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급 신청서(별지 제2호 서식), 자동차등록증(사본) 또는 자동차등록원부(갑, 사본), 제조사 사업자등록증, 세금계산서, 통장사본
 - ※ 전기승합은 최소 자부담금 확인서(대형). 하자보증보험증권 등 추가서류 필요하며, 어린이통학버스는 발급일로부터 10일 이내 「어린이 통학버스 신고필증」 를 제출하여야 함
- ☞ 서울특별시에서 신청서류 확인 후 자동차 제작·수입사로 구매 보조금 지급

7. 신청시 유의사항

- ① 공고문의 보조금 지원대상 및 자격 요건에 부합되어야 하며,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보조금(국비, 시비, 이자)을 환수함
- ②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자격 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출고되지 않을 경우 취소자로 변경됨(단, 전기 승합의 경우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출고되지 않을 경우 취소하거나 대기자로 변경)
- ③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하거나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타 차종(차명 포함)이나 연식 변경 차량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당초 계약을 파기할 경우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에서 취소됨. 다만, 부득이하게 변경시에는 서울특별시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음.
 - ※ 개인 선호 변경, 제조수입사 출고 지연 등은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 안됨
- ④ 1대의 차량을 공동명의로 구매하는 복수의 구매자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 구매자 중 대표자 1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 (대표자 1인에게만 재지원 제한기간 적용)
 - ※ 대표신청자와 자동차 등록시 대표소유자가 동일해야 보조금 지급 가능
 - ※ 대표자 1인과 공동명의자가 모두 서울시 내에 거주하는 가족일 경우만 공동명의로 지원가능
- ⑤ 취약계층(장애인, 차상위이하계층), 상이·독립유공자, 소상공인 등이 자동차 구입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등 수급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으며, 임대주택 입주자격 등에서도 탈락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계 기관에 문의 필요
- ⑥ '25년도 공고문에 요구하는 서류로 작성해야하며 붙임서류에 해당하는 서식 무단변경 시 지원신청 후순위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음
- ⑦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신청 진행상황, 차량계약 등 관련 사항은 각 전기자동차 제작·수입사로 문의
- ⑧ 대형 전기승합차 구매자는 해당 차량 구매를 위해 최소 1억원 이상 부담*(이하 “최소 자부담금”)해야 하며, 최소 자부담금과 전체 보조금(구매보조금, 저장보조금 등, 이하 “전체 보조금”)의 합이 해당 차량가격을 초과할 수 없음
 - * 구매자가 이자 지원, 충전기 설치 등 별도 지원을 받은 경우 해당 금액(또는 물품의 가액)만큼은 자부담금 산정 시 제외
 - ※ (예시) 구매자가 1억원 대출을 받아 구매비용을 충당하는 대형 전기승합차 구매에서 제작사가 구매자와의 별도 약정에 따라 대출이자 2천만원을 대신 부담하기로 한 경우, 구매자의 자부담액은 이를 제외한 8천만원이 되므로 상기 규정을 위반

- ⑨ 대형 전기승합차의 경우 전체 보조금의 합이 해당 차량가격의 70%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을 구매보조금에서 차감
- ⑩ 대형 전기승합차 제작·수입사가 차량 구매를 유도할 목적으로 구매자에게 대출 등 자금지원을 실시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환경부는 해당 제작·수입사의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

< 보완요청 안내 >

- 구매보조금 진행과정에서 제출한 서류 및 보조금 지원 시스템 상 정보(구매자 정보, 보조금액, 첨부파일 등) 보완 필요시 서울특별시에서 차량 제작·수입사로 보완요청
- ※ 차량 제작·수입사에서는 보완요청일로부터 보완기한(1차 7일, 2차 7일)이내 보완해야 하며, 기한이내에 보완 못할시 보조금 신청대상에서 취소 가능
(미보완으로 인한 신청 취소는 서울특별시에서 책임지지 않음)

8. 의무준수 사항

-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자동차 구매자는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시행규칙 제79조의4 제1항에 따른 8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하여야 함
 - ※ 의무이행기간(8년) 내 차량 판매시 의무준수 사항은 매수자에게 인계 됨(보조금 반환의무 포함)
 - 다만, 부득이한 사유로 차량 최초 등록일로부터 2년내 차량 판매 시에는 서울특별시 내 주소를 둔 개인,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에 매매 가능하며 서울특별시의 사전 판매 승인을 득하여야 함
 - 차량 최초 등록일로부터 2년 이내에 타 지자체 판매 시에는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시행규칙 제79조의4제2항에 명시된 환수율에 따라 서울특별시 보조금을 환수함

<표1. 운행기간별 보조금 회수요율(%)>

| 전기자동차 운행기간 | 3개월 미만 | 3개월 이상 6 개월 미만 | 6개월 이상 9 개월 미만 |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|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|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|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|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|
|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회수요율 | 70% | 65% | 60% | 55% | 50% | 40% | 30% | 20% |

- 차량 최초 등록일로부터 2년 내에 명의이전 없이 타 지자체로 이사시(전출)에는 보조금 미환수(사전승인 불필요)

- 다만, 보조금을 지원받아 전기화물차를 구매한 자가 해당 차량을 2만 km 이상 운행하지 아니하고 최초 등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판매하는 경우 지급된 보조금의 30% 이상 회수함

※ 서울특별시 내 판매 : 지급된 보조금(국비+시비)의 30%

※ 타 지자체 판매 : 국비의 30% + 시비[운행기간별 회수율 (표1) 적용]

※ 2024년 7월 26일 이전 보조금 신청한 전기화물차의 경우에는 해당 차량을 1만 km 이상 운행하지 아니하고 최초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판매하는 경우 지급된 보조금의 30% 이상 회수함

○ 의무운행기간(8년) 내 등록 말소(폐차의 경우 2년, 수출의 경우 8년) 시에는 서울특별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,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함. ※ 말소 사유에 따라 보조금 회수율 별도 적용

- 다만,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등록말소를 하려는 자(이하 “예외적 말소자”)에 대해서는 등록말소 사유로 보험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상금액이 예외적 말소자가 해당 차량 구매 시 지불한 가격보다 높은 경우에 한해 그 차액을 회수(차액 회수액은 법정기준에 따른 보조금 회수액을 초과해서는 안됨)

<표2. 운행기간별 보조금 회수율(%)>

1. 수출을 목적으로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

| 전기차 사용기간 | 6개월 미만 |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|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|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|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|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| 36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| 48개월 이상 96개월 미만 |
|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회수 율 | 70% | 65% | 60% | 55% | 50% | 40% | 30% | 20% |

2. 그 밖의 경우

| 전기차 사용기간 | 3개월 미만 |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|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|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|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|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|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|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| 24개월 이상 96개월 미만 |
|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회수 율 | 70% | 65% | 60% | 55% | 50% | 40% | 30% | 20% | 0% |

9. 기타 사항
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전기차 통합콜센터(☎1661-0970) 및 서울시 다산콜센터(☎120), 전기자동차 제작·수입사 접수처로 문의
- 제조·수입사 지점, 대리점(카마스터, 직원 포함)의 전기차 업무처리(단순문의 포함) 등 관련 모든 문의는 해당 제조·수입사 본사에 문의
 - ※ 제조·수입사 본사에서 모든 대리점 지점에 대해서 민원 문의 처리
- 공고문 및 신청서식 등에 예시되지 않은 사례에 대한 해석 및 결정은 서울시 친환경차량과의 의견을 따름
- 보급 사업 도중 차종 추가 등의 사유로 차종별 지급되는 추가보조금(지역할인제, BMS 알림기능) 신청 가능하며 친환경차량과 검토 후 반영
 - ※ 지역할인제 : 전기화물 제작수입사가 차량가격 할인(50만원)하면 해당차량에 대해 시비 지원액의 50만원 추가 지원(택배차량은 50만원 추가로 지원)
 - ※ BMS 알림기능 : 제조수입사가 BMS 이상 상태 알림 기능을 4년 이상 무상제공하고 사용자가 알림 기능 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시비 보조금의 20% 추가 지원(단, 주차 상태에서 24시간 이상 배터리 이상을 감지(상시 또는 간헐)시 지급